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의 안 번 호	759
------------	-----

2025. 9. 17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9. 3. / 이진환 의원 등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25. 9. 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5. 9. 1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,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1조)
- 홍보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2조)
- 홍보대사의 위촉과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~제4조)
-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홍보대사의 예우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~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의 역할·위촉·예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있어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
-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으며 그밖에 입법상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